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의정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노만석
전화 031-714-4460 / 팩스 031-714-2572

보 도 자 료
2021. 4. 26.(월)

제 목	포천시 공무원의 개발정보이용 투기 사건 수사결과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·반부패수사전담부(부장검사 김성동)는 포천시 과장 **A○○(5급)**의 부패방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을 지난 4. 7.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였는바,

  - 피의자는 포천시의 철도노선 연장사업 담당과장으로서 '옥정-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'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역사 위치정보를 이용하여, 2020. 9.경 인근 토지 800평을 40억 원(현재 100억 원 상당)에 매입한 혐의로 4. 23. **구속 기소**하였음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)

- 본건 토지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가 되어 있으며, 유죄 확정 후 공매하여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임

1 피의자

- **A○○**[52세, 포천시 ○○과장(지방직 5급 공무원), **구속**]

2 피의사실 요지

-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(부패방지법위반)**

A○○은 2018~2019경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을 수립·발표하는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서 '옥정-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'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(소흘역) 위치정보 등 비밀을 이용하여, 2020. 9.경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**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하여 취득**함 (현 시세기준 100억 원 상당)

3 수사 경과

- '21. 3. 7. 경기북부지방경찰청, 고발장 접수
- '21. 3. 23.~25. 경찰 구속영장신청, 검찰 구속전 면담 후 보완요구 및 영장청구
  - 우리 청은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전수 실시하고 있음
  - 검사는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보완 자료를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
  -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증거관계 및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세한 의견을 피력함
- '21. 3. 29. 구속영장 발부
- '21. 4. 7.~22. 사건 송치 후 당청 보완수사
- '21. 4. 23. 구속 기소

4 처분 결과

- **부패방지법위반 사건 : 구속 기소**

  - 피의자는 토지매입 시 신설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,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신설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나,

  - 피의자가 철도연장사업 관련 공문을 결재하였고, 검찰에서 압수물 재분석을 통해 확보한 **철도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에 의하면 피의자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, 신설역사 위치 등을 설명**한 사실이 있는 등 피의자가 사전에 신설역사 위치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확인

  - 구입시기(2020. 9.)가 2019. 11.경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**역사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후**인 사실 확인

  - 포천시가 철도 노선,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**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네 차례 거부**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됨

- **수익 몰수 관련**

  - 본건 토지는 부패방지법상 몰수대상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치가 된 상태이고,

  -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집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통해,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34억 원 상당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, 나머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임 ▧